2026년 제10차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」 회의록

안 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1-1호. 2026년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1-2호. 2026년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 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38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39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0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1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2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3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4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8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5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9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6) 의안번호 제2026-보상-10-2-10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7)
개 최 일 시	2026년 10월 8일(목요일)
장 소	영상회의
출 석 위 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10인 출석

회 의 내 용

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
제2026-보상-10-1-1호	원안 의결	-
제2026-보상-10-1-2호	원안 의결	-
제2026-보상-10-2-1호	기각	붙임1 참조
제2026-보상-10-2-2호	기각	붙임2 참조
제2026-보상-10-2-3호	기각	붙임3 참조
제2026-보상-10-2-4호	기각	붙임4 참조
제2026-보상-10-2-5호	보류	붙임5 참조
제2026-보상-10-2-6호	기각	붙임6 참조
제2026-보상-10-2-7호	보상	붙임7 참조
제2026-보상-10-2-8호	보류	붙임8 참조
제2026-보상-10-2-9호	기각	붙임9 참조
제2026-보상-10-2-10호	기각	붙임10 참조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10차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

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38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45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공황장애(의증)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의 정신 질환은 백신 접종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며,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정신 질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부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,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2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39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66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정맥기능부전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, 본 안건의 경우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 혈전 관련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어도 정맥에 영향을 주어 정맥기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함.

○ 혈전 검사 결과가 없으며 약 처방 내역을 보면 혈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일반적인 하지 부종 등의 증상에 특별한 검사 없이(의증) 처방할 경우 정맥기능부전이라는 질환명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, 본 안건의 경우 검사 기록이 없으므로 확진이 아님

○ 정맥기능부전을 진단할만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환명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, 증상에 대한 대증(물리)치료만 받으셨고, 급성이 아닌 만성 소견을 보임

○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, 기저질환이 없고,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 자체로는 기재된 자료가 있으며, 내원에서 치료까지 상세한 기록이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

- (서면 의견 종합) 백신 접종 후 우측 무릎 통증, 멍, 정맥류 양상 등의 증상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, 진단 받은

만성 말초성 정맥기능부전에 대한 명확한 검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만성 말초성 정맥기능부전이 발생한다는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근거가 부재하므로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0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77세/화이자 3차/교모세포종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악성 종양을 발현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이론·경험칙상 근거는 없으며, 암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고려할 때, 접종 후 오히려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시간적 개연성이 배제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1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51세/화이자 2차/상세불명 심근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심근염이 화이자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, 본 안건의 경우 접종 2년 3개월만에 급성 심근염이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적 개연성이 매우 떨어져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5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2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53세/화이자 3차/다형홍반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초기 발현된 국소적인 피부질환(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)과 이후 다형홍반은 서로 다른 질환의 양상으로 추정되며, 다형홍반 진단 시에는 검사 결과 혈관염의 소견이 있으므로 혈관염 자체는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, 발현시기상 시간적 개연성 충족 여부에 쟁점이 존재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류

라. 기타

○ 임상경과의 연속성 등 피부과 전문의 심층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

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3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19세/화이자 1차/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, 캠필로박터균은 환경에 널려 있는 균이 아닌 오염된 고기 섭취 등에 따라 발생하므로 명백한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로 사료됨

○ 접종 후 3일째의 증상은 진료를 받지 않아 이를 이후 경과와 분리해서 보상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, 명백한 다른 원인균이 있는 사례로서 백신과의 인과관계 추정은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4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41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길랭-바레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시간적 개연성 기준을 충족하며,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-바레증후군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포함되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8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5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7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급성심근경색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경색 사망 건과 관련하여, 동종 사례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 및 질병청의 항소 논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 필요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류

라. 기타

○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

붙임 9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6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77세/화이자 2차/다발성 장기부전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사망에 이르게 한 담도 폐쇄와 예방접종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이나, 접종 후 소화기계 질환 발생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

○ 고령층의 경우 평소 건강하셨다가도 담도결석이나 담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1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 건(특-코로나19-2026-1-47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83세/화이자 1차 /고혈압성 심장병 및 익사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부검감정서*를 검토하였을 때, 예방접종이 아닌 명백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* 사인 : 고혈압성 심장병과 익사의 병합으로 추정
참고사항 : 코로나백신과 관련하여 부검 및 사후검사결과의 범위 내에서는 이에 의한 염증 및 감염, 과민반응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고, 내부 장기들에서 백신투여와 관련하여 급사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해부학적인 변화는 보지 못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